

전문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

화천군 공고 제2026-1161호

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.

2026. 9. 1.

화 천 군 재 무 관

1. 공고에 부치는 사항

- 가. 입찰건명: 토속어류종자 배양장 어업기반 정비공사(기계)
- 나. 위 치: 화천군 간동면 어룡동길 509-16
- 다. 공사기간: 착공일로부터 70일
- 라. 추정금액: 금79,073,000원(금칠천구백칠만삼천원)
 - 추정가격 71,884,545원 부가가치세 7,188,455원
- 마. 기초금액: 금79,073,000원(금칠천구백칠만삼천원)
- 바. 입찰기간: 2026. 9. 1.(화) 16:00 ~ 2026. 9. 7.(월) 16:00
- 사. 개찰일시 및 장소: 2026. 9. 7.(월) 17:00 /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
- 아. 입찰방법: 총액입찰, 적격심사 비대상, 전자수의견적, 지역제한(화천군)

2. 입찰참가자격

- ☐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,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
 - 입찰공고일 전일 「신규사업자(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,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)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.」 부터 입찰일(낙찰자는 계약체결일)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(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)가 화천군에 있는 업체
 -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·가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
- ☐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.
- 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,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

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(<http://www.g2b.go.kr>)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※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6조제1항 제4조 및 「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」 제7조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.

3.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

- ☐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$\pm 3\%$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천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.
- ☐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, 국민건강보험료, 퇴직공제부금비,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, 품질관리비(이하 “국민연금보험료 등”)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.745%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」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[별표1]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. 다만,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천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.
- ☐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,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,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『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』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.

4. 현 장 설 명

- ☐ 현장설명은 생략하며,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 -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: 축산과 내수면담당(033-440-2947)
 - 공고내용: 재무과 계약담당(033-440-2157)
- ※ 설계서(도면, 설계설명서, 물량내역서 등),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,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,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,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.

5.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

- ☐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,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,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.
- ☐ 「건설산업기본법」과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」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‘공사·용역·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’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.
- ☐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,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☐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,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.

국민건강보험료	875,357 원	국민연금보험료	1,156,592 원
노인장기요양보험료	115,021 원	산업안전보건관리비	1,327,269 원
퇴직공제부금비	0 원	품질관리비	0 원
안전관리비	0 원	합 계	3,474,239 원

6.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

- ☐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,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.
- ☐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7.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

- ☐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9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」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“12”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.

8. 지역업체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

- ☐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(화천군 업체 우선)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- 낙찰자는 지역건설업체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.
 -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화천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
 -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 시 지역 업체(화천군)에서 우선 구매
 -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(화천군) 사용
-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
 - ①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도급 업체,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②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의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 - ③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2조 및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(또는 직불합의)를 발급(요청)하여야 하며, 대가 청구 전 공사 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(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)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④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,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등 개별법령에 따르며, 하도급 시 「건설산업기본법」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하도급 계약 시(변경계약 포함) 관련서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

9.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

- ☐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22조 및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68조의 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,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(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)를 제출하고,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

10. 청렴계약이행준수

- ☐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

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,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1.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

- ☐ 「이해충돌방지법」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,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 ‘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’를 계약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(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)

12.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

- 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「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」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. 또한,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‘「안전 및 환경관리 준수 서약서」’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.
- ☐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「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.

《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(법 제4조, 제9조)》

-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·예산·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- ③ 중앙행정기관·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- ④ 안전·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13.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

- ☐ 본 공사는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」의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 ‘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’ 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「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」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.
- ☐ 「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」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, 노무비 청구·지급·확인인은 화천군 「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」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
- ☐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(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)을 제출해야 하며, 계약담당자는

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(지)청에 통보합니다.

14. 『하도급지킴이』 운영에 관련사항(3천만 원 이상, 30일 초과)

- ☐ 하도급지킴이 운영
 -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‘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’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 다만,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‘하도급지킴이이용 약약서’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.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.
 -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, 노무비, 장비·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.
 -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‘나라장터-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’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기타사항
 - ▷ 「하도급지킴이」 사용 안내: 하도급 교육자료&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
 - ▷ 「하도급지킴이」 사용 문의: 고객센터 1588-0800
- ☐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,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(발주자, 원도급자, 하도급자)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.
- ☐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(<http://www.ftc.go.kr>)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.
 - ※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.
- ☐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.
- ☐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(공사계약자)는 하도급대금을 「건설산업기본법」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,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,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.
- ☐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

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(변경 시 제출 포함)하며,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5. 유 의 사 항

- ☐ 전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·시행령·시행규칙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(행정안전부예규),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(행정안전부예규)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, 공사 입찰공고(첨부물 포함),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·준수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☐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.
- ☐ 본 입찰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,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,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.
- ☐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(☎ 1588-0800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16. 기 타 사 항

- ☐ 낙찰자(계약상대자)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,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☐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(부가세 제외)의 2.5%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.
- ☐ 화전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,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☐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(www.g2b.go.kr)와 우리군 홈페이지(www.ihc.go.kr)에 게재되며,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